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31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3101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1 선고 2015가합20113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16. 11. 24.

판결 선고 2016. 12. 2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1. 선고 2015가합201134 판결

주 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2. 9. 27. 접수 제33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2. 9. 27. 접수 제33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6. 17. 접수 제18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원고는 1991. 1. 11. 설립되어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피고 B1) 은 1995. 9. 1.부터 2007. 8. 31.까지 원고의 관리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1995. 9. 1.부터 2005. 3. 18.까지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3) 피고 C은 2006. 5.경 이후로 피고 B 및 그의 처인 H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피고 B 및 H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등

- 1) 원고는 2002. 8. 9. 원고의 사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D 소유의 평택시 E 대 1,603㎡(이하 '이 사건 사옥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02. 8. 16.

이 사건 사옥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는 맹지로서 이 사건 사옥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였는데, D은 이 사건 사옥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F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원고에 대한 매도를 권유하였고, 결국 D의 소개에 의하여 원고는 2002. 8. 21. F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2002. 9. 26. D으로부터 추가로 D 소유의 이 사건 제2 토지를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인데다가 원고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그 당시 원고의 관리담당 임원이자 등기이사이던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 B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2. 9. 27. 접수 제33139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2. 9. 27. 접수 제33140호로 각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2013.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 B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B은 2014. 6. 17.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186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옥토지를 원고 사옥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토지를 주차장 및 잔디식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 토지를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8. 21. F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2002. 9. 26. D로부터 D 소유의 이 사건 제2 토지를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인데다가 원고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그 당시 원고의 관리담당 임원이자 등기이사이던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 B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F 및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명의를만을 피고 B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와 F 및 D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이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2)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매도인 약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매도인인 F 및 D은 최근에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명의자이자 명의수탁자인 피고 B 대신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F 및 D 사이에 따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별개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F 및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나 별개 양도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 및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B의 주장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로금 내지 공로금으로 받은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F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이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다만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사옥 앞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필요시 우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10년 동안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피고 B 명의로 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 B과 F 및 D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인 F 및 D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나,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등 참조). 나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구 부동산실명법은 전 소유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원인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전 소유자에게 그 원인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66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가 피고 B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와 F 및 D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원고의 사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F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옥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인 F 및 D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원인 피고 B을 형식적 매수인으로 내세운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의 문제가 없는 이 사건 사옥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옥토지에 건축된 원고 사옥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매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로금 내지 공로금으로 받은 금원을 재원으로 하였다거나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 및 D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 B이 이 사건 제1 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당시 피고 B은 자신의 채권자인 L이 2014. 5. 2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자, 이에 따른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나)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3)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고 C이 위와 같이 피고 B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4)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C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피고 B 명의로 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 B과 F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인 F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이 소유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도인인 F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C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과 그의 처인 H에 대하여 9억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관계로 피고 B으로부터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것인데,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던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B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는 그 등기명의자가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 1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F나 그를 대위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피고 C은 피고 B 및 그의 처인 H에 대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C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로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이 소유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과 원고의 직원인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갑 제14호증(녹취록)에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일시까지 물어보면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지 1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C이 실제로 피고 B에게 피고 B의 위와 같은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행위가 피고 C의 적극적인 권유나 개입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탁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B 사이에 민사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 또는 배임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다.

나) 따라서 피고 C이 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여미숙

판사김재형

판사위광하

별지

1) 종전 성명은 'K'이었는데, 2008. 1. 24. 현재의 성명으로 개명하였다.

2)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